시설관리 및 운영 규정

제정 2010. 4. 20. (규정 제6호)

일부개정 2016. 1. 28. (규정 제12호)

일부개정 2022. 2. 21. (규정 제50호)

일부개정 2023. 12. 26. (규정 제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춘천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시설관리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원의 시설’이란 전시실, 강의실, 전통음악연습실, 로비 등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시설과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수강, 전시 등에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본원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춘천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용시설

2. 사용목적 및 사유

3. 사용기간 및 횟수(시간 및 횟수 명시)

4. 사용 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

5. 사용자의 인적사항

제4조(사용료)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본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3.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사용예정일 15일 이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100/100)

4.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사용예정일 14일부터 사업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반액 반환 (50/100)

[전문개정 2016. 1. 28.]

제5조(사용료의 감면(면제))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원 유관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감면(면제)할 수 있다. 단 동일 단체에 대해서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2. 2. 21.>

② 문화원 회원이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 2. 21.>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단, 제1호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원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시간을 위반한 사유가 발생할 때

4. 기타 원장이 공익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년도 사용신청을 제한한다. 단,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한하며, 취소횟수는 신청자별 누적횟수로 한다.

1. 1회 : 3개월 (1. 1. ~ 3. 31.)

2. 2회 : 6개월 (1. 1. ~ 6. 30.)

3. 3회 이상 : 1년 (1. 1. ~ 12. 31.)

<신설 2023. 12. 26.>

제7조(사용시간)

1. 1일은 09:00~17:00으로 한다.

2. 오전은 09:00~13:00으로 한다.

3. 오후는 13:00~17:00으로 한다.

4.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전시장 사용기간은 전시시작일 금요일부터 전시 종료 목요일 14:00시 까지 1주일 단위로 한다.

제8조(사용료의 납부) ① 본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계약은 30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일로부터 2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8.>

③ 삭제 <2022. 2. 21.>

④ 사용시간이 기준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단, 1시간미만 초과 사용 시에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⑤ 삭제 <2022. 2. 21.>

제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비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본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본원의 시설이나 설비, 비품을 훼손 또는 손실,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가 해당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의 작품설치 및 전시 기간 중 전시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작품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측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6. 1. 28.>

④ 전시 종료 후 반출되지 아니한 작품(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하여는 본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설 2016. 1. 28.>

제10조(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본원을 사용하며 발생한 모든 폐기물과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10. 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의 사용허가 업무의 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
| --- |
| ■ 시설관리 및 운영 규정 [별표 1] <개정 2016. 1. 28.> <개정 2022. 2. 21.> |
|  |
| 시설사용료 (제8조 제1항 관련) |

|  |  |  |
| --- | --- | --- |
| **사용시설** | **기 준** | **사용료** |
| 전 시 실 | 1일 | 100,000원 |
| 강 의 실 | 1회 2시간 | 70,000원 |

|  |
| --- |
| ■ 시설관리 및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
| 전시실 신청서 |

<앞면>

|  |
| --- |
| ( ) 사용허가 신청서  사 용 목 적 :  사 용 기 간 : 20 . . ~ . . ( 일간)    사 용 자 :  사용예정인원 : 명  위와 같이 춘천문화원 ( )를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신청인전화번호 :  성 명 : (인)  춘천문화원장 귀하 |

<뒷면>

|  |
| --- |
| 서 약 서  사 용 자 성 명 :  사 용 자 주 소 :  위 본인은 귀 관의 ( )를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임대 사용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아 래 -  1. 문화원 내의 시설물 등을 소중히 아껴 사용하겠습니다.  2. 춘천문화원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공공의 질서를  준수하겠습니다.  3. 승낙없이 시설 및 구조변경을 하거나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게 양도, 대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4. 사용 중에 원내의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5. 다음 사람의 깨끗한 사용을 위하여 사용 후에는 청소를 하여 청결히 하겠습니다. |
| 서약자 : (인)  년 월 일  춘천문화원장 귀하 |

|  |
| --- |
| ■ 시설관리 및 운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
| 사용허가서 |

|  |
| --- |
| ( ) 사용허가서  사 용 자 성 명 :  사 용 장 소 :  사 용 면 적 :    년 월 일  사 용 기 간 ( 일 시 분간)  년 월 일  위와 같이 춘천문화원 ( )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춘천문화원장 귀하 |

|  |
| --- |
| ■ 시설관리 및 운영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
| 사용료 감면(면제)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수번호 : 제 호   |  |  |  |  | | --- | --- | --- | --- | | 성명(기관,단체장) |  | 주소 |  | | 사 용 목 적 |  | | | | 사 용 시 설 |  | | | | 사 용 기 간 |  | | | | 감면(면제)신청사유 |  | | |   \* 첨부 : 관계 증빙서류  위와 같이 귀 원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기관/단체명) : (인)  춘천문화원장 귀하  ………………………………………………………………………………………………  사 용 허 가 서  발 급 번 호 : 제 호  사용자 성명 :  사 용 장 소 :  사 용 목 적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 일 시 분 간)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함  춘 천 문 화 원 장 |